

참가업체 정보

회 사 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	
담 당 자		소 속 / 직 책
전 화		팩 스
핸 드 폰		E - mail
홈 페이지		출 품 품 목

신청내역 및 금액 (해당 항목에 V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 가 (VAT별도)	신청내역	금액
부 스	독립부스 (9㎡, Space Only)	부스	원
	조립부스 (9㎡, Assembly Type Booth)	부스	원
전 기	단상 220V/ 삼상 380V	KW	원
	단상 220V (24시간)	KW	원
LAN	100MB	PORT	원

- 독립부스는 전시 면적만 제공(Space Only)하며, 부스 구조물은 참가업체가 직접 설치(시공)하여야 합니다.
- 독립부스의 최소 신청 단위는 2부스입니다.
- 조립부스 포함사항 : 전시 면적 및 조립식 형태의 부스를 제공하며,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함내역 : 측면 및 후벽면, 국/영문 상호간판, 형광등(40W) 1개, 스포트라이트(100W) 3개, 부스바닥 파이텍스, 220V 소켓 2구(1KW), 안내데스크 및 의자 각 1개, 상담테이블 1개 및 상담의자 2개
- 신청서 파일과 사업자등록증(JPG, PDF파일 형태)을 smartcity@bexco.co.kr로 함께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참가비 총액의 50%)은 인보이스(Invoice) 수령 후 14일 이내, 잔금은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가비 납입계좌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사무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는 World Smart City Expo 2025의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의 내용과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_____ 인

담당자 _____ 인

※뒷면의 참가규정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조 (용어의 정의)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를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하고 「주관자」라 함은 LH, K-Water, BEXCO, 스마트도시협회를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

-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 주관자는 신청부스 규모, 신청 순서, 참가비 납입 순서 및 전시품의 성격에 따라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 주관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조 (전시실 관리)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조 (납입 조건)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전시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서 제출 후 14일 이내, 잔금은 30일 이내까지 완납해야 한다.
-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조 (해약)

-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변경 후 15일 이내에 주최(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150일 전 취소 또는 규모 축소시 : 기 납부액 전액 환불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120일 전 취소 또는 규모 축소시 :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60일 전 취소 또는 규모 축소시 :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또는 규모 축소시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 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9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 하여야 한다.

제 10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1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해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2조 (안전관리 총칙)

- 참가업체는 개장시간 이전에 전시품 및 부스 환경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장 시 모든 안전 요소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사무국은 안전한 행사환경 조성을 위해 장치, 행사, 철거기간에 경비구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참가업체 및 기타 운영업체는 경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필요시 참가업체는 인명·재산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 해야한다.
- 참가업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전시품·제반장비·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을 면책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는 전시장 내 모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참가업체의 과실(참가업체 발주 용역사 포함)로 인한 오염·파손·손상·훼손 등 발생 시 전시장 규정에 맞추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 참가업체는 참가업체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벡스코의 규정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업체 관리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협력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 전시품의 실연(實演)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에는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발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다만, 전시품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가스·압축공기·급배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운영업체 책임자가 부스 내 설비와 시운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에는 적절한 안전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후 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불량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지시하고 사무국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조 (차량 운행 및 화물주차장 이용 규정)

- 반입·반출 기간에는 상하차 작업 외에는 전시품 상하차 지역 및 반입·반출 지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물품 운송이 끝난 즉시 이동하여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시장 내 출입·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전시장 내 규정 속도 등 별도 고지된 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본 전시회 규정 속도 : 시속 5km 이하)
- 전시품 반입·반출기간에 승용차 및 승합차는 화물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제 14조 (방화 규칙)

-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과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조 (안전관리 기타사항)

참가업체는 본 규정을 포함한 벡스코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

제 16조 (보충 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손해 배상 및 기타 쟁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벡스코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